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회)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운영에 있어 부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조를 반영하여 파견 경찰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제상 파견의 경우에는 경찰청이 자율적으로 파견을 관리하고, 파견기간의 연장이나 조기복귀 등의 경우에만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개선하는 등 경찰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인사법령체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음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인사혁신처와 협의되었음
-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7항 중 “법 제8조제3항제6호”를 “법 제10조제3항제6호”로 한다.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직제상 파견) 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경찰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직제상 파견”이라 한다)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② 제30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파견의 경우에는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인 5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 또는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상 파견 기간의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직제상 파견 중인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생략) 2. <u>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하는 경우: 기소된 날</u> 3. 4. (생략)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4. (현행과 같음)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 ⑥ (생략) ⑦ <u>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u> ⑧ (생략) <u><신설></u>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법 제10조제3항제6호</u> ----- ----- ----- -----. ⑧ (현행과 같음) <u>제30조의4(직제상 파견) 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경찰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직제상 파견”이라 한다)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u> <u>② 제30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파견의 경우에는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인 5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라 파견 또는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u>